



아산시농업기술센터 공고 제 2025-140호

「2025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」 공고

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7조 제2항에 따라 2025년 지방 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. 6. 17.

아 산 시 장

1. 지원대상 및 규모

가. 사업명 : 2025년 소규모 농식품기업 생산·유통시설 지원사업(공모3차)

나. 지원규모 : 100,000천원(시비 50,000 자담 50,000)

※사업비 지원한도 : 개소당 1천만원~100백만원, 재원비율 : 보조 50%, 자담 50%
다. 사업추진 기본방향 : 농촌자원을 활용한 소규모 농식품기업의 육성 지원
라. 지원대상 : 공고일 현재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지역 농림축산물을 활용한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을 생산하는 소규모 농식품기업

마. 지원 제외 대상

- 동일단체의 유사·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·사업
- 최근 3년 이내에 불법 시위를 주최·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 위반등으로 처벌받은 단체
-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
-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(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)
-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(주관 등)하는 행사
-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
-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(기금포함)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

2. 지원절차

-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⇒ 신청 및 접수 ⇒ 사업 소관부서 검토 ⇒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⇒ 지방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⇒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⇒ 지방보조금 지원

3. 지원신청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25. 6. 17.(화)~2025. 7. 1.(화)까지
- 접수방법 : 방문 또는 우편접수(2025. 7. 1.(화) 18:00 도착분까지 유효)
- 접수처 : 아산시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
(우 31445,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염성길 70-30 농식품유통과)
- 제출서류 :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, 사업계획서 1부 등(신청서양식 붙임)
※ 서식은 아산시청 홈페이지(<http://www.asan.go.kr/>)고시·공고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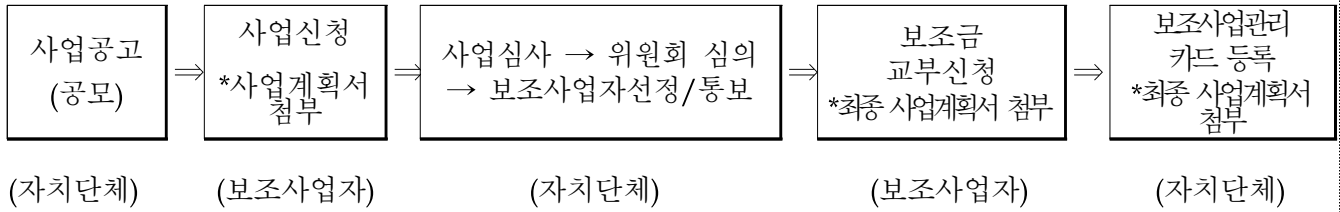
4. 심의기준 및 결과통보

- 심의기관 : 아산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
- 심의기준 :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, 타당성, 적법성 등 종합 고려
- 결과통보 : 사업선정 후 사업부서(농식품유통과) 개별 통보

5. 기타사항

-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
-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
- 단체별 1개 사업을 단체 성격에 맞는 1개 소관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여러 개 부서에 신청하면 안 됨
-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, 지방보조금법령 및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, 지방보조금 관리기준(행정안전부 예규 제174호)에 따르며,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
-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수행배제, 고발 조치함.
- 상세한 내용은 농식품유통과(☎536-8557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< 유 의 사 항 >



1.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(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)

- 교부신청서 제출(신청자 명칭, 주소,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,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, 자기자본 부담액, 보조사업기간, 기타 아산시장이 정하는 사항)
- 사업계획서 제출(사업개요,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, 보조사업 수행 계획,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,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, 보조사업 효과,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, 기타 아산시장이 정하는 사항)
- 지방보조금 관리통장(계좌) 등 사본 제출 : 지방보조사업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(자부담 포함),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함(농협 시금고 통장 및 체크카드 개설)
-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

2. 지방보조사업의 수행

- 지방보조금의 용도와 사용금지
-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아산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
- 보조사업자는 아산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
-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아산시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
-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

3.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

-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,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
-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
- 중요재산에 대하여 아산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보고

4.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

-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
- 법령,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- 기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

5. 기타사항

-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관리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
-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
- 단체별 1개 사업을 단체성격에 맞는 부서에 신청(분산 신청시 불인정)
-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, 아산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, 기타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
- 궁금한 사항은 농식품유통과(☎536-8557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